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3.4.16(화) 11:00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이수완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3년 4월 5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4월 9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주요정책 방향을 규정한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2011.5.19),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지식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나.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안 제10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주요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지식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함.